



의령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제855호 2023. 7. 12.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의령군 고시 제2023-98호 도로명주소 고시 2

공 고

- 의령군 공고 제2023-89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2일

의령군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 429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 조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
별 지 참 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(☎055-570-2440)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1302-3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 429	2023-07-12	국어학자 이극로 선생의 호를 이용하여 고루로로 명명

●의령군 공고 제2023-89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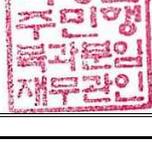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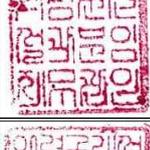
의령군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2일

의령군수

1. 신조공인사용일: 2023. 7. 10.
2. 등록사유: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폐지
3. 신조 및 폐기 공인의 인영

구분	종류	공인명	규격	인영	비고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주민생활지원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주민생활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	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경제기업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경제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	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건설교통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신조	특수공인	의령군건설교통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	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주민행복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주민행복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	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일자리경제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일자리경제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	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건설과분임재무관인	2.0cm×2.0cm		
폐기	특수공인	의령군건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	